

부산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302809(본소), 2021가단9377(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1,85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6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영도구에서 욕실공사 및 자재납품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9년 2월까지 피고로부터 욕실공사 등을 발주받아 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859,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일시	현장	공급품	금액(단위: 원)
1	2018. 12. 19.	E-제주지사	천정재	4,488,000
2	2019. 1. 8.	F 외2	천정재	6,600,000
3	2018. 12. 10.	G 현장	천정재 외 9 건	14,256,000
4	2019. 1. 21.	G 현장	환풍기	1,425,600
5	2019. 2. 18.	H 제주현장	돔 등	10,526,000
6	2019. 1. 30.	E 외	샤워부스	11,858,000
7	2019. 2. 15.	D 발주분	천장재	2,706,000

합계				51,859,600

나. 판단

살피건대 갑1~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발주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와의 거래는 피고의 동생인 I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년 5월에 I이 소개한 원고에게 자재구매를 위한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2019년 1월 원고는 I과 결탁하여 피고의 거래처인 J(주)로부터 피고의 매출금 3,550만 원을 피고 몰래 가로채 갔다. 원고가 취득한 위 금액 합계 6,550만 원(= 3,000만 원 + 3,550만 원)은 부당이득인데 피고는 선의적으로 그 중 1,900만 원을 원고의 귀속부분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차액인 4,650만 원(= 6,550만 원 - 1,900만 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년 5월에 합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을4, 5, 1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의 거래처로 보이는 J에서 원고에게 2019년 1월경 3,5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동생인 I이 원고와 거래 관계가 있었고 I이 피고와 같이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내역은 원고와 I의 거래 관계에 기하여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